

●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11호

「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-6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, 취급시설 설치 · 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 · 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

-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기준

나. 취급시설 설치 · 관리기준 명확화

-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범위,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적용대상,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, 호스 적용 대상 및 성능 · 관리기준

다. 기술 · 세부기준 재정비

- 배관설비(밸브, 개스킷) 기준, 조명설비 조도기준, 긴급세척시설,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nics.me.go.kr)의 자료 마당-법령정보에서 확인